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¹⁾

Composite Index of Alcohol Policies in OECD Countries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언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음주관련 사고 및 범죄, 음주로 인한 결근이나 업무 비효율성 등의 생산성손실,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정영호 등(2006)²⁾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비용(Cost Of Illness)이 20세 이상 총 질병 비용 중 8.58%라는 분석결과가 있다. 이는 주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환경오염 중에서 흡연(9.1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2006년 “파랑새플랜 2010”이라는 국가음주폐해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집행을 위한 후속행정조치와 재원마련이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의 미흡함으로 우리나라의 월간음주율⁴⁾은 2012년에 남자 73.5%, 여자 42.9%, 위험음주율⁵⁾은 2011년에 남자 26.0%, 여자 6.3%로 정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보고는 OECD 국가들의 음주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음주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고,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환경지표, 가격지표, 개인지표, 시

1) 본고는 정영호 외(2012),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일부를 보완·수정한 것임.

2) 정영호 등(2006),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지원단.

3) 파랑새플랜 2010 평가(2010), 알코올사업지원단.

4)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5) 만 19세 이상 지난 한 해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잔으로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비율.

표 1. WHO 음주정책 분류 내용

구분	세부 지표
광고제한	TV광고규제, 케이블 TV 광고 규제, 공중파 라디오 광고 규제, 로컬 라디오 광고 규제, 인쇄물, 잡지 광고 규제, 극장에서의 광고규제, 옥외광고 규제, point-of-sale광고규제, 인터넷 광고규제
연령제한	주류 구매 및 소비 연령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무작위음주측정
주류 가격	평균 주류가격
소매점 및 주점 판매	일수, 시간대, 장소, 밀도
후원	스포츠행사, 청소년 이벤트 후원여부
판매 프로모션	생산자, 소매자, 식당 등에서의 프로모션
라이선스	판매, 생산 라이선스
조세부과	조세부과
공공장소이용	공공장소 음주규제
경고문구	광고에서의 경고문구, 포장지 경고문구

자료: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장지표, 생산지표, 유통지표의 정책지표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문헌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활용하여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하였다.

2. 자료원

OECD 국가들의 음주정책통합지표 산출을 위해 본 고에서는 WHO(2011)의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를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음주소비 현황과 이에 따른 건강상의 폐해, 음주관련 질병부담, 음주정책 등에 대해 각 국가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각 국가의 음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음주통합지표를 산출하기 전에 본 연구에 포함

된 변수 중에 주요한 변수를 선별하여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특성들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류판매 제한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2008년기준) 19세이며, 우리나라보다 연령제한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고도주의 경우), 스웨덴, 미국이었으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 16세에서 18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 주류 판매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고도주의 경우),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이었으며, 소매점의 판매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고도주의 경우),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고도주의 경우), 스웨덴, 영국, 미국이었다.

소매점의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체

표 2. 주류판매 연령제한 비교

국가	기준 연도	식당, 주점			소매점		
		맥주 연령제한	와인 연령제한	고도주 연령제한	맥주 연령제한	와인 연령제한	고도주 연령제한
호주	2008	18	18	18	18	18	18
오스트리아	2008	16	16	16	16	16	16
벨기에	2008	16	16	18			18
캐나다	2008	18	18	18	18	18	18
체코	2008	18	18	18	18	18	18
덴마크	2008	16	16	16	16	16	16
핀란드	2008	18	18	18	18	18	20
프랑스	2008	16	16	18	16	16	16
독일	2008	16	16	18	16	16	16
그리스	2002	17	17	17	17	17	17
헝가리	2008	18	18	18	18	18	18
아이슬란드	2008	20	20	20	20	20	20
아일랜드	2008	18	18	18	18	18	18
이탈리아	2008	16	16	16			
일본	2008	20	20	20			
한국	2008	19	19	19	19	19	19
룩셈부르크	2002	16	16	16	16	16	16
네델란드	2008	16	16	18	16	16	18
뉴질랜드	2008	18	18	18	18	18	18
노르웨이	2008	18	18	20	18	18	20
폴란드	2008	18	18	18	18	18	18
포르투갈	2008	16	16	16	16	16	16
슬로바키아	2008	18	18	18	18	18	18
슬로베니아	2008	18	18	18	18	18	18
스페인	2008	16	16	16	16	16	16
스웨덴	2008	18	18	18	18	20	20
스위스	2008	16	16	18	16	16	18
터키	2008	18	18	18	18	18	18
영국	2008	16	16	18	18	18	18
미국	2008	21	21	21	21	21	21

자료: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코,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이며, 판매점의 밀도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이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무작위 음주측정은

표 3. 소매점의 주류 판매일수 및 시간 제한 비교

국가	기준 연도	소매점의 판매일수 제한			소매점의 판매시간 제한		
		맥주	와인	고도주	맥주	와인	고도주
호주	2011	no	no	no	no	no	no
오스트리아	2011	no	no	no	no	no	no
벨기에	2011	no	no	no	no	no	no
캐나다	2011	no	no	no	no	no	no
체코	2011	no	no	no	no	no	no
덴마크	2011	yes	yes	yes	yes	yes	yes
핀란드	2011	no	yes	yes	yes	yes	yes
프랑스	2011	no	no	no	no	no	no
독일	2011	no	no	no	no	no	no
그리스	2011	no	no	no	no	no	no
헝가리	2011	no	no	no	no	no	no
아이슬란드	2011	yes	yes	yes	yes	yes	yes
아일랜드	2011	yes	yes	yes	yes	yes	yes
이탈리아	2011	no	no	no	no	no	no
일본	2011	no	no	no	no	no	no
한국	2011	no	no	no	no	no	no
룩셈부르크	2011	no	no	no	no	no	no
네델란드	2011	no	no	yes	no	no	yes
뉴질랜드	2011	yes	yes	yes	no	no	no
노르웨이	2011	yes	yes	yes	yes	yes	yes
폴란드	2011	no	no	no	no	no	no
포르투갈	2011	no	no	no	no	no	no
슬로바키아	2011	no	no	no	no	no	no
슬로베니아	2011	no	no	no	yes	yes	yes
스페인	2011	no	no	no	no	no	yes
스웨덴	2011	yes	yes	yes	yes	yes	yes
스위스	2011	no	no	no	no	no	no
터키	2011	no	no	no	no	no	no
영국	2011	no	no	no	yes	yes	yes
미국	2011	no	no	no	no	yes	yes

자료: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며, <표 5>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마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맥주광고에 대한 규제는 크게 규제없음, 자발적 규제, 부분규제, 완전규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영TV에서 맥주광고는 부분규제

표 4. 소매점의 판매처 및 밀도 제한 비교

국가	기준 연도	소매점의 판매일수 제한			판매점의 밀도 (outlet density) 제한		
		맥주	와인	고도주	맥주	와인	고도주
호주	2011	no	no	no	no	no	no
오스트리아	2011	no	no	no	no	no	no
벨기에	2011	no	no	no	no	no	no
캐나다	2011	no	no	no	no	no	no
체코	2011	yes	yes	yes	no	no	no
덴마크	2011	no	no	no	no	no	no
핀란드	2011	yes	yes	yes	no	yes	yes
프랑스	2011	no	no	no	yes	yes	yes
독일	2011	no	no	no	no	no	no
그리스	2011	no	no	no	no	no	no
헝가리	2011	yes	yes	yes	no	no	no
아이슬란드	2011	yes	yes	yes	no	no	no
아일랜드	2011	yes	yes	yes	yes	yes	yes
이탈리아	2011	no	no	no	no	no	no
일본	2011	no	no	no	no	no	no
한국	2011	no	no	no	no	no	no
룩셈부르크	2011	no	no	no	no	no	no
네델란드	2011	yes	yes	yes	no	no	no
뉴질랜드	2011	yes	yes	yes	no	no	no
노르웨이	2011	yes	yes	yes	no	no	no
폴란드	2011	yes	yes	yes	no	no	no
포르투갈	2011	no	no	no	no	no	no
슬로바키아	2011	no	no	no	no	no	no
슬로베니아	2011	yes	yes	yes	no	no	no
스페인	2011	yes	yes	yes	no	no	no
스웨덴	2011	yes	yes	yes	no	no	no
스위스	2011	no	no	no	no	no	no
터키	2011	yes	yes	yes	no	no	no
영국	2011	yes	yes	yes	no	no	no
미국	2011	yes	yes	yes	yes	no	yes

자료: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를 실시하고 있다.

<표 7>에서는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주류의 실질가격 증감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

사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전부터 물가지수로 보정한 주류의 실질가격 증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코, 이탈리아, 터키에서 실질가격을 증가시킨 것으

표 5. 음주관련 정책지표

국가	기준 연도	random breath testing	Adult	young
호주	2008	yes	0.05%	zero tolerance
오스트리아	2008	yes	0.05%	0.01
벨기에	2008	yes	0.05%	0.05%
캐나다	2008	yes	0.08%	0.04%
체코	2008	yes	zero tolerance	zero tolerance
덴마크	2008	yes	0.05%	0.05%
핀란드	2008	yes	0.05%	0.05%
프랑스	2008	yes	0.05%	0.05%
독일	2008	no	0.05%	zero tolerance
그리스	2002	yes	0.05%	0.02%
헝가리	2008	yes	zero tolerance	zero tolerance
아이슬란드	2008	yes	0.05%	0.05%
아일랜드	2008	yes	0.08%	0.08%
이탈리아	2008	yes	0.05%	0.05%
일본	2002	yes	0.03%	0.03%
한국	2008	yes	0.05%	0.05%
룩셈부르크	2002	yes	0.08%	0.08%
네델란드	2008	yes	0.05%	0.02%
뉴질랜드	2008	yes	0.08%	0.03%
노르웨이	2008	yes	0.02%	0.02%
폴란드	2008	yes	0.02%	0.02%
포르투갈	2008	yes	0.05%	0.05%
슬로바키아	2008	yes	zero tolerance	zero tolerance
슬로베니아	2008	yes	0.05%	zero tolerance
스페인	2008	yes	0.05%	0.03%
스웨덴	2008	yes	0.02%	0.02%
스위스	2008	yes	0.05%	0.05%
터키	2008	yes	0.05%	0.05%
영국	2008	no	0.08%	0.08%
미국	2008	yes	0.08%	0.02%

자료: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로 나타났다. 한편, WHO의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2004)에서는 주류에 대한 가격수준을 보기위해 콜라가격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주류가격과

콜라가격을 비교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2005년을 기준으로 콜라가격 지수와 주류(맥주와 소주)가격 지수가 역전되어 현재는 맥주와 소주의 가격지수가 콜라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맥주광고 규제 비교

(단위: 년)

국가	기준연도	공영 TV	공영 Radio	인쇄매체	옥외광고
호주	2008	ban	voluntary	voluntary	voluntary
오스트리아	2008	no	no	no	no
벨기에	2008	no	no	no	no
캐나다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체코	2008	no	no	no	no
덴마크	2008	partial	partial	voluntary	voluntary
핀란드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프랑스	2008	ban	partial	partial	no
독일	2008	partial	partial	voluntary	voluntary
그리스	2002	no	no	no	no
헝가리	2008	ban	ban	partial	-
아이슬란드	2008	ban	ban	ban	ban
아일랜드	2008	partial	partial	voluntary	voluntary
이탈리아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일본	2002	no	no	voluntary	voluntary
한국	2008	partial	partial	no	no
룩셈부르크	2002	voluntary	voluntary	voluntary	no
네델란드	2008	voluntary	voluntary	voluntary	voluntary
뉴질랜드	2008	no	no	voluntary	no
노르웨이	2008	ban	ban	ban	ban
폴란드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포르투갈	2008	partial	partial	no	no
슬로바키아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슬로베니아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스페인	2008	partial	voluntary	voluntary	partial
스웨덴	2008	ban	ban	ban	ban
스위스	2008	ban	ban	partial	partial
터키	2008	ban	ban	partial	ban
영국	2008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미국	2008	voluntary	voluntary	voluntary	no

주: no: 규제없음, voluntary: 자발적 규제, partial: 부분규제, ban: 완전규제
 자료: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표 7. 유럽국가의 주류 실질가격추이

국가	실질가격 추이
오스트리아	stable
벨기에	inconclusive
체코	increased
덴마크	decreased
핀란드	decreased
프랑스	decreased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decreased
아이슬란드	decreased
아일랜드	-
이탈리아	increased
룩셈부르크	-
네델란드	decreased
노르웨이	stable
폴란드	-
포르투갈	inconclusive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inconclusive
스웨덴	decreased
스위스	-
터키	increased
영국	decreased

주: 2008년 기준
 자료: European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3. 음주정책통합지표 분석 결과

1) 분석 방법⁶⁾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지표를 분

류화하여 통합하였다. 정책지표 분류는 사회환경 지표, 가격지표, 개인지표, 시장지표, 생산지표, 유통지표로 나누었다. 본 분석에서는 BtG (Bridging the Gap) 음주정책지표 산출방식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의 음주 정책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WHO(2011)⁷⁾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영호(2013), 음주정책통합지표 고찰 및 적용, 보건복지포럼, 198, pp.5-17.

7) WHO,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2011

표 8. 콜라,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 (2005년=100)

구분	콜라	맥주	소주	맥주/콜라	소주/콜라
1990	53.6	58.9	41.1	1.10	0.77
1991	56	61.1	45.2	1.09	0.81
1992	63	69.4	49.9	1.10	0.79
1993	66	76.7	53.4	1.16	0.81
1994	71.2	78.5	56.9	1.10	0.80
1995	73.3	82.6	57.8	1.13	0.79
1996	74.9	88.4	59.6	1.18	0.80
1997	78.9	92.2	61	1.17	0.77
1998	85.2	99.5	68.1	1.17	0.80
1999	86	99.1	68.3	1.15	0.79
2000	80.5	95.7	82.5	1.19	1.02
2001	84.5	93.8	81.9	1.11	0.97
2002	84.1	93.3	86.4	1.11	1.03
2003	88.4	98.5	91.7	1.11	1.04
2004	94.6	98.6	97.9	1.04	1.03
2005	100	100	100	1.00	1.00
2006	102.3	96.9	100.3	0.95	0.98
2007	107.8	96.2	103.8	0.89	0.96
2008	116.1	98.6	106	0.85	0.91
2009	125.1	102.1	104.7	0.82	0.84
2010	131.6	113.3	112.5	0.86	0.85

주: 1)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시장에서 상거래 관습에 따라 가장 많이 거래되는 단위를 조사단위로 지정함.

2) 소비자 물가지수는 개개 품목의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를 작성하여 지수에 소비지출규모에 비례하는 영향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3)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는 다 반영하며, 가격은 실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대한보건협회, 음주관련 통계시스템, <http://stat.kpha.or.kr>

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문헌이나 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고, 대체할 수 있는 문헌이나 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 BtG(Bridging the Gap) 음주정책통합지표의 적용결과

BtG에서는 영역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델파이(Delphi) 기법을 적용하여 14명의 전문가로부터

표 9. 음주정책지표 포함 범위: BtG 방식 적용

	세부 지표	점수	포함여부
생산 규제		(max=2point)	
	증류주(spirits) 생산 국가 독점	1	○
	와인 생산 국가 독점	½	○
	맥주 생산 국가 독점	½	○
유통 규제		(max=10point)	
	소매점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증류주(spirits)	2	○
	소매점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와인	1	○
	소매점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맥주	1	○
	소매점의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증류주	1	○
	소매점의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와인	½	○
	소매점의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맥주	½	○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일수 제한	1	○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시간 제한	1	○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한 기타 제한 조치	1	○
	주점,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일수 제한	1	○
	주점,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시간 제한	1	○
주점,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한 기타 제한 조치	1	○	
개인 규제		(max=4point)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20세)	2	○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18세)	1	○
	주점, 식당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20세)	2	○
	주점, 식당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18세)	1	○
마케팅 규제		(max=3point)	
	모든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3	○
	특정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2	×
	특정 주류 광고의 법적 규제	1	○
	특정 주류 광고 및 후원의 자발적 규제	½	○
사회환경적 조치		(max=4point)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미만	4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2	○
공공정책	국가 음주예방 또는 교육프로그램	(max=1point)	
		1	×

자료: Eruocare Bridging the gap project, Scaling alcohol control policies across europe, 2006

각각의 점수를 받고, 결과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델파이분석 결과, 음주정책지표에서 생산 2점, 유통 10점, 개인 4

점, 마케팅 3점, 사회환경 4점이며, 조세정책을 16 점으로 부여하였다. 본 BtG에서는 조세정책 영역을 크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음주정책지표 포함 범위: BtG 방식 적용, 계속

	세부 지표	점수	포함여부
조세		(max=16point)	
정책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44.01유로 이상	4	○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2.01~44	3	○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1.01~22	2	○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6~11	1	○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01유로 이상	4	×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0.01~20	3	×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1~10	2	×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75~5	1	×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4.97유로 이상	4	○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7.49~14.96	3	○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3.75~7.48	2	○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5~3.74	1	○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4.97유로 이상	4	○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7.49~14.96	3	○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3.75~7.48	2	○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5~3.74	1	○

자료: Eruocare Bridging the gap project, Scaling alcohol control policies across europe, 2006

본 고에서는 BtG 방식을 적용한 음주정책통합 지표 산출 결과를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와 조세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세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9.7보다 낮은 7점이 부여되어 30개 OECD국가 중에 22위에 머물렀다.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의 7개국에서 주류에 대한 조세부과수준 데이터가 없어 이들 국가를 제외한 2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8.4보다 낮은 14점이 부여되어 OECD 22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두 가지 형태의 분석결과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조세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는 73.3%, 조세정책을 포함한 경우는 77.3%로 나타났다.

표 9. 음주정책통합지표 분석 결과: BiG 방식 적용

지표1 (조세정책제외)			지표2* (조세정책포함)		
순위	국가	통합지표	순위	국가	통합지표
1	노르웨이	20	1	노르웨이	30
2	아이슬란드	19	2	아이슬란드	30
3	스웨덴	19	3	스웨덴	28
4	핀란드	17	4	핀란드	28
5	아일랜드	13	5	아일랜드	23
6	네델란드	13	6	네델란드	22
7	폴란드	13	7	폴란드	22
8	슬로바키아	12	8	터키	21
9	터키	11	9	뉴질랜드	20
10	슬로베니아	11	10	슬로바키아	19
11	헝가리	11	11	덴마크	19
12	프랑스	10	12	헝가리	17
13	일본	9	13	영국	17
14	뉴질랜드	9	14	체코	17
15	덴마크	9	15	벨기에	16
16	영국	9	16	오스트레일리아	15
17	오스트레일리아	9	17	프랑스	14
18	미국	9	18	한국	14[77.3%]**
19	이탈리아	8	19	스위스	14
20	스페인	7	20	미국	11
21	체코	7	21	포르투갈	10
22	한국	7[73.3%]**	22	캐나다	8
23	스위스	7	23	오스트리아	8
24	독일	6	24	슬로바키아	-
25	벨기에	6	25	일본	-
26	포르투갈	6	26	이탈리아	-
27	캐나다	5	27	스페인	-
28	룩셈부르크	4	28	독일	-
29	오스트리아	3	29	룩셈부르크	-
30	그리스	2	30	그리스	-
	평균	9.7		평균	18.4

주: *지표2: 주류에 대한 조세부과수준 데이터가 없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의 7개국 제외됨.

** 괄호안 수치는 우리나라의 순위를 백분위로 환산한 수치임.

표 10. 음주정책통합지표의 세부지표별 분석 결과: BtG 방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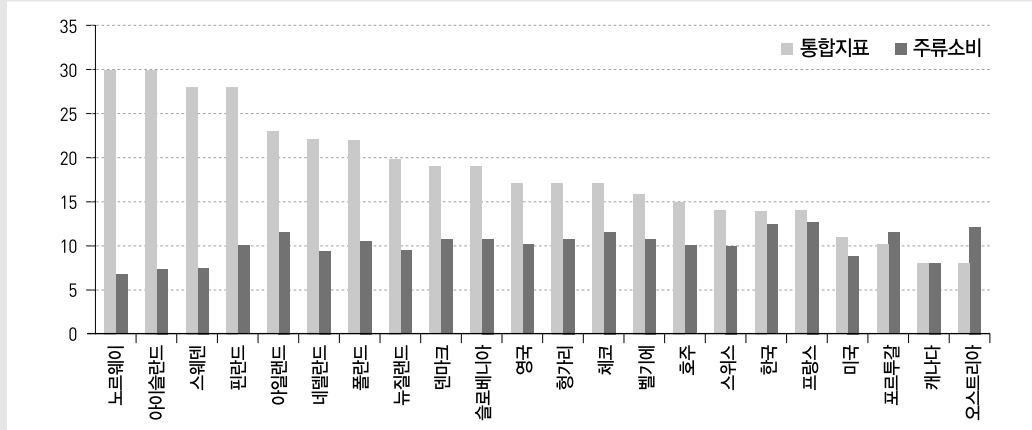
국가	생산	유통	개인	시장	사회	조세
노르웨이	0	9	4	3	4	10
아이슬란드	0	10	4	3	2	11
스웨덴	0	9	3	3	4	9
핀란드	0	9	3	3	2	11
아일랜드	0	8	2	3	0	10
네덜란드	0	6	2	3	2	9
폴란드	0	4	2	3	4	9
슬로바키아	0	2.5	2	3	4	.
헝가리	0	2	2	3	4	6
슬로베니아	0	4	2	3	2	8
터키	0	4	2	3	2	10
프랑스	0	4	1	3	2	4
오스트레일리아	0	2	2	3	2	6
덴마크	0	4	0	3	2	10
일본	0	2	2	1	4	.
뉴질랜드	0	6	2	1	0	11
영국	0	4	2	3	0	8
미국	0	2	4	3	0	2
이탈리아	0	3	0	3	2	.
체코	0	1	2	0	4	10
한국	0	2	2	1	2	7
스페인	0	2	0	3	2	.
스위스	0	0	2	3	2	7
벨기에	0	2	2	0	2	10
독일	0	0	1	3	2	.
포르투갈	0	3	0	1	2	4
캐나다	0	0	2	3	0	3
룩셈부르크	0	3	0	1	0	.
오스트리아	0	0	0	1	2	5
그리스	0	0	0	0	2	.
평균	0.0	3.6	1.7	2.3	2.1	7.8

4. 결론

BtG 방식에 의한 음주통합지표를 OECD 국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세정책을 제외했을 경우 30개 OECD 국가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22개국 중 17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각각 73.3%(조세정책 제외), 77.3%(조세정책 포함)로 하위 3/4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tG 방식에 의한 분석에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성인 주류 소비와 본 고에서 산출한 음주통합지표를 결합하여 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을 보면, 음주통합지표 순위와 성

그림 1. OECD 국가의 BtG 방식 음주통합지표(조세정책 포함)와 1인당 성인 주류 소비



주: 1) 음주통합지표는 본고에서 산출한 결과이며, 성인 주류 소비는 OECD,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으로 2013』를 활용하여 작성. 단, 한국은 Global Information System for Alcohol and Health」 자료 활용
2) 터키 제외

인 주류 소비는 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음의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데, 조세정책을 포함한 국가들(단, 터키 제외)의 BtG 음주통합지표와 성인 주류 소비는 -0.52의 음의 상관관계로 산출이 되었다.

음주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정책지표에는 몇 가지 장점 및 단점이 존재한다. 음주정책지표는 각 국가별로 음주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지표는 법적 또는 규제적인 조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비정형화된 음주규율에 대한 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음주정책지표는 실제 수행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규제조치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가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포괄하여 제시하여야 하

지만, 데이터 수집의 제한으로 모든 조치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음주정책 지표를 분석하여 통합된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국제 비교하는 것은 각국의 음주정책의 노력도와 처해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정책의 강도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성인 주류 소비량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음주 등 지표도 정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효과성 및 수용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